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38
----------	-------

발의연월일 : 2025. 8. 7.

발 의 자 : 복기왕 · 이재강 · 김남근
박용갑 · 정준호 · 김기표
박정현 · 문진석 · 김우영
모경종 · 최혁진 · 서영교
안도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인권 등을 위한 공익소송은 국민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에 그 승소의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결국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개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이 현행법에 따른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인 경우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국가가 면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자의적인 면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송비용의 회수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두면서, 예외적으로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소송비용의 회수) ①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관 행정청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인권 및 소비자의 권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이하 “공익소송”이라 한다)으로서 소송 당사자의 사정, 소송의 성격 및 경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면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소관 행정청의 장은 확정된 그 소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서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면제가 타당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소송비용 면제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법무부 소속 공무원 2명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소송 소송비용 면제 여부의 심의·의결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소송 소송비용 면제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심의

3. 그 밖에 공익소송 소송비용 면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5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검사·판사

또는 3급 이상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을 각각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소송의 판결
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소송비용의 회수) ①</u> <u>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판</u> <u>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관 행</u> <u>정청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부</u> <u>담하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u> <u>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 · 건강</u> <u>· 안전, 인권 및 소비자의 권익</u> <u>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u> <u>의 이익에 관한 소송(이하 “공</u> <u>익소송”이라 한다)으로서 소송</u> <u>당사자의 사정, 소송의 성격 및</u> <u>경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의</u> <u>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면제</u> <u>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u> <u>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u> <u>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의</u> <u>결을 거쳐 그 전부 또는 일부</u> <u>의 회수를 면제할 수 있다.</u> <u>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소</u> <u>송의 소송비용 면제를 심의 ·</u> <u>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u>

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소관 행정청의 장은 확정된 그 소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서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면제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소송비용 면제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법무부 소속 공무원 2명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

원협의회의 이사장이 각각 1명

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소송 소송비용 면제 여부의 심의 · 의결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소송 소송비용 면제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심의

3. 그 밖에 공익소송 소송비용 면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5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검사 · 판사 또는 3급 이상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을 각각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u>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법무부령으로 정한다.</u>
--	--